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검토보고서



2022. 3.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 3. 16.

경기도시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발의자: 안영란 의원 등 8명(박종길, 이신자, 김인호, 원종진, 조복희, 박정환, 배지훈)
- 발의일자: 2022. 2. 24.
- 회부일자: 2022. 3. 4.
- 검토기간: 2022. 3. 7. ~ 3. 11.(5일간)

2. 제안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비용추계 : 비대상
- 입법예고(2022. 2. 25. ~ 2022. 3. 8.)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임.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 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과 협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822024
----------	----------

발의일자: 2022. 2. 24.

발의자: 안영란, 박종길, 이신자, 김인호,
원종진, 조복희, 박정환, 배지훈

1. 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제정조례안: 붙임
- 나. 관계법령
 -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중소기업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판로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종류 등)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주무관청의 감독) ① 제6조에 따라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하여서 설립 되는 조합, 사업조합,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및 중앙회는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감독 대상이 아닌 조합, 사업조합 및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감독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및 제9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독하는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둘 이상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감독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지원시책의 기본방향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 방안
3.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교육
4.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협동조합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② 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종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업무) ① 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 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9.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 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제1항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14.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와 의결을 거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출자금과 임여금 합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사업협동조합

제78조(조합원의 자격)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다만,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82조(업무) ① 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 공동 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2.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의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3.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교육, 정보의 제공 및 연구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5.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6. 조합원에 대한 복지 후생 사업
 7. 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및 경영 기법 등의 공동 연구 사업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연합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0.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 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협동조합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대규모점포 또는 상점가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2. 소비자와 조합원의 보호 또는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③ 전국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국조합 외의 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시·도지사가 사업조합의 지역과 업종 및 사업 목적 등의 특수성에 따라 특정한 사업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협동조합연합회

제88조(회원의 자격) ①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경우 그 연합회의 업무 구역의 일부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같은 업종의 조합과 사업조합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②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경우 그 연합회의 업무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과 사업조합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제93조(업무)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제4호, 제5호, 제9호, 제10호, 제14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생산, 가공,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및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공동 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
 2. 회원 사이의 사업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그 조합원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체와 회원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체 사이의 수탁·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회원에 대한 사업자금 대부의 알선과 연합회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5.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조직, 사업, 신기술 개발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지도
 7. 회원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
 8. 조합에 관한 조사 연구
 9.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10.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회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13.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15.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② 연합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중앙회의 협조를 받아 중앙회와 합동으로 감사할 수 있다.
- ④ 연합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회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그 감사 결과를 중앙회를 거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제99조(회원) ① 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
2. 전국조합
3. 지방조합
4. 사업조합
5. 중소기업관련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③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99조의2(준회원) ①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중앙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중앙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6조(업무)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과 사업의 지도
2. 정회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부에 대한 건의
3. 정회원에 대한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지도와 교육
4. 정회원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
5.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
6. 정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교부 알선
7. 중앙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8.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9.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10. 정회원을 위한 공동사업
11.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입 업무와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및 관리
12.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단지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관리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정회원의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15.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원 및 연수원의 설립 · 운영
 16. 창고 등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 공동화 시설의 설치 · 운영
 17. 중소기업 제품의 전자 상거래
 18. 중소기업 관련 신문의 발행
 19.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20.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보험 등의 계약을 「상법」 제63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위하여 체결하는 사업
 21.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의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22. 공제사업(조합원 등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공공 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2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정회원이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중앙회는 주무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감사 결과 시정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회원에 대하여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 그 감사 결과를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정회원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2. 3.>
- ⑦ 중앙회는 정회원이 조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5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 나. 기업의 출연금
 -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2. 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⑨ 중앙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중앙회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35조(보조금) ① 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6조(권한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